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연납 공제금액 계산 관련 법·시행령과 계산식 불일치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계산식과 일치하도록 정비

□ 개정내용

- 자동차세 연납 공제기간 계산 관련 법·시행령과 계산식 불일치
 -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개정하여 연납시 신고기간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의 범위 명확화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경우부터 적용